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목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7월 21일까지 존속하는 정원 1명(8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29일까지에서 2027년 7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1명(7급 1명)은 감축하고,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각각 과학기술·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7. 11. ~ 7.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6명”을 “5명”으로, “임업서기 2명”을 “임업서기 3명”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3 중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75”를 “74”로 하고, 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 · 임업주사 또는 임업연구사 4 다음에 “행정주사 · 임업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을 신설하고, “기록연구사 1”을 삭제한다.

별표 3의2 중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49”를 “48”로,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5”를 “26”으로 한다.

별표 6의4를 삭제한다.

별표 7 중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19”를 “118”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18 다음에 “행정주사보 · 임업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을 신설하며,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77 다음에 “행정서기 · 임업서기 또는 공업서기 2”를 신설하고, 공업서기 “7”을 “6”으로,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39”를 “140”으로, 기계운영서기 “2”를 “1”로, 사무

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행정서기·임업서기 또는 공업서기 “1”을 “2”로,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39”를 “140”으로, 기계운영서기 “2”를 “1”로, 사무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10 중 “2025년 1월 27일”을 “2027년 8월 31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4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3조 제2항을 삭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2025년 7월 31일”을 “2027년 7월 31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명)은 2025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7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명)은 2025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은 2027년 7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은 2028년 7월 28일까지 존속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3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명,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6명</u>,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1명, 행정서기 또는 <u>임업서기 2명</u>)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략)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제21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 ----- ----- ----- 5명- ----- ----- ----- ----- <u>임업서기 3명</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③ (생략)

④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3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의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4와 같으며, 별표 6의4의 정원 중 1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 ~ ⑪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4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단서 삭제>

⑤ ~ ⑪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4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① 삭 제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은 2025년 7 월 29일까지,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 보 1명)은 2026년 7월 29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1호 산림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농림축 산식품부령 제39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 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 로 감축되는 정원 1명(행정사무 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을 제 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 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 은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 다.	원의 존속기한) <삭 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1호 산림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 ----- ----- ----- ----- ----- ----- ----- -- 2027년 7월 31일-----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명), 별표 6의4의 정원 1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 및 별표 7의2의 정원 7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명)은 각각 2025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명)은 2025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7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명)은 2025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한다.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3]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u>75</u>	<u>74</u>	-1
•	•	•	
•	•	•	
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또는 방재 안전사무관	1		
<u>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u>	<u><신 설></u>	<u>1</u>	+ 1
•	•	•	
•	•	•	
행정주사 · 임업주사 또는 임업연구사	4		
<u>행정주사 · 임업주사 또는 기록연구사</u>	<u><신 설></u>	<u>1</u>	+1
•	•	•	
•	•	•	
<u>기록연구사</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3의2]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49</u>	<u>48</u>	-1
•	•	•	
•	•	•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u>25</u>	<u>26</u>	+1
•	•	•	
•	•	•	

[별표 7]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119</u>	<u>118</u>	-1
<u>행정주사보 · 임업주사보 또는</u>			
<u>공업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	.	.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77		
<u>행정서기 · 임업서기 또는 공</u>			
<u>업서기</u>	<u><신 설></u>	<u>2</u>	+2
공업서기	<u>7</u>	<u>6</u>	-1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u>139</u>	<u>140</u>	+1
.	.	.	
.	.	.	
기계운영서기	<u>2</u>	<u>1</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4</u>	<u>3</u>	-1
---------	----------	----------	----

[별표 7의2]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임업서기 또는 공 업서기	<u>1</u>	<u>2</u>	+1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u>139</u>	<u>140</u>	+1
·	·	·	
·	·	·	
기계운영서기	<u>2</u>	<u>1</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4</u>	<u>3</u>	-1